

2024 『하끝 세법(1쇄)』 추록 및 정오표

2024 『하끝 세법(1쇄)』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7	※ 수탁~ (가) 수~ (나) 신~	④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직권등록 내용수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4) 등록말소 내용 추가	② 사업 개시일 전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다)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사업자가 위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① 미등록~	① 미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u>간편사업자등록</u> 을 신청~ 1% 개정
p16	④ 재화·~ ⑤ 재화·~	④ 재화~ ⑤ 재화~ ⑥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개정
p21	(가)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일반~	(가)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u>시외고급고속버스</u> (일반~ 개정
p21	교육용역(면세~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육용역~신고된 학교,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학원, ~ 개정
p28	② 건물정착면적×5배~ 내용 추가	② 건물~ ※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도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 용역으로 함 개정 (2024.7.1.부터 시행)
p32	납세의무자~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납세의무자~종료일부터 <u>1년</u> 이내에 거래~ 개정
p33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신용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포함) : 신용카드~ 개정
p37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개정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47	(타) 최근 3년간 「조세법」~	(타) 최근 <u>2년간</u> 「조세법」~ 개정 (중전 : 3년간)
p55	직전 연도~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	직전 연도의 ~합계액이 <u>1억4백만원</u> 미만인 <u>개인사업자</u> 개정 (중전 : 8천만원)
	* 사업자등록~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	*사업자등록~ 합계액이 <u>1억4백만원</u> 에 미달~
p56	간이과세자에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자에 ~합계액이 <u>1억4백만원</u> *에 미달~ * 1억4백만원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부터 2025.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개정 (중전 : 8천만원)
p59	④ ③에도 불구하고 ① ~	④ ③에도 불구하고 ① 및 ②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의 간이과세자'는 ③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부터 시행)
p60	직전 연도의 ~ 8천만원 미만인 ~	직전 연도의 ~ <u>1억4백만원</u> 미만인 ~
p81	21 ×(공급일로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21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24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p88	3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 공급시기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3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 공급시기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p92	05 음식점업을 하는 ~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여~ 12 납세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05 음식점업을 하는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12 납세지 ~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p93	21 결정 ~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22 사업자등록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	21 결정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22 사업자등록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
p139	⑧ <u>자본의 감소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u>	⑧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개정 ⑨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의제배당) 개정
p141	(9) 임원 또는 ~충족하는 것	(9)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개정
p143	* '중소기업 및 중~인건비를 포함한다.	* 인건비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를 포함한다. 개정 (중전 : 중소기업에 한정함)
	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 경쟁력강화를 위한 ~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
p145	(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가)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률 : 「가맹사업법」~	삭제
	② 위 ①을 적용할 ~ <u>곱한 금액</u>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u>분명하지 아니한 경우</u>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중전 :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text{손금불산입대상 대상 손해배상금} = A \times \frac{B-1}{B}$ A :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146	<p>내국법인~소득처분함)</p> <p>1) 업무~</p> <p>$\text{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times (1 - \text{업무사용비율}^*) = \text{업무의 사용금액}$</p>	<p>내국법인~소득처분함)</p> <p>업무사용금액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단,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함)</p> <p>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정</p> <p>$\text{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times \text{업무사용비율}^* = \text{업무사용금액}$ $\therefore \text{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text{업무사용금액} = \text{업무의 사용금액}$</p>				
p151	<p>⑫ 「수목원·정원의 조~ 내용 삽입</p> <p>② <u>소비성서비스업 ~아닐 것</u></p>	<p>⑬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2023 개정</p> <p>②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p>				
p157	<p>② 보험회사가 ~ 손금으로 한다.</p>	<p>② 보험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또는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개정</p>				
p158	<p>④ 정부로부터 ~ 온실가스 배출권</p>	<p>④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개정</p>				
p160	<p>③ 자본~</p> <p>④ 내용삽입</p> <p>① 특수관계인으로~</p> <p>② 불균등증자시 신~</p> <p>③ 특수관계 ~</p> <p>* ② 외의 경우~</p>	<p>④ 일정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p> <p>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익금불산입액(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개정</p> <p>② 특수관계인으로~</p> <p>③ 불균등증자시 ~</p> <p>④ 특수관계 ~</p> <p>*1) ② 외의 경우~</p> <p>*2) 일정한 합병 :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무조건 적격합병으로 보는 합병임)</p>				
p184	<p>(해) 소득공제 대상 내~</p> <p>(사) 내용삽입</p>	<p>(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함)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개정</p>				
p188	<p>표 내용 삽입</p>	<table border="1"> <tr> <td>결정통지</td> <td>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미납된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td> </tr> <tr> <td>징수유예</td> <td>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td> </tr> </table>	결정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미납된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징수유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결정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미납된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징수유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p199	<p>② 이월결손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p>	<p>② <u>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u>, 이월결손금 및 외국납부세액공제~</p>				
p203	<p>*1) 대통령령~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p> <p>(가) 수익자가~</p> <p>(나) *2)의~</p>	<p>1) 대통령령으로 ~ 신탁 : (3)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신탁 개정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삭제)</p> <p>(가), (나) 삭제</p>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207	*2) 내부거래손익 제거대상~ :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 ① 감가상각자산~ ② 금융투~	*2) 내부거래손익 제거대상(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손익 이연자산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 ① 감가상각자산인 유형자산(건축물 제외) ②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⑤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개정 비고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장부가액 불문
p214	38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한다. 내용삽입 38 ×(30,000,000×2/3=20,000,000을 ~	38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한다. 단,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는 3배이다. 38 ×(30,000,000×(3-1)/3=20,000,000을 손급불산입하여야 한다)
p263	(4) 2024년 ~인정됨 (5) 내용삽입	(5) 회사의 모든 업무용승용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p294	(-) 1,500,000	(+) 1,500,000
p316	① 매출액(매출환입~제외) ^{*1}	① 매출액(매출환입·~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반환금액 제외) ^{*1} 개정
p318	③ 복리후생비	③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신설 ④ 복리후생비 · 사용자 부담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등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설 · 노무제공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신설 · 단체순수보장성~
p320	(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중 ~	(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약사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포함)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p324	*3) 직접비용 : 유류비·재료비 등~	*3) 직접비용 :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함)·재료비 등(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함) 개정
p327	① 국외 등의 지역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 국외 등의 지역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개정 *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 (가)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 친족관계, (나)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개정
p328	4) 공무원이 받는 상급과 부상 5) 표 삽입	5)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지원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신설
p329	②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포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으로서 월 150만원 이하의 것 포함) 개정
p338	⑤ 종업원등 또는 대학~ * 내용삽입	*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가) 사용자등의 경우 :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관계,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p348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기준시가가 9억원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개정 (중전 : 9억원)
p356	⑧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신설
p361	직전 과세기간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개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368	주택(주택부수토지 ^{*1)} 포함) : 허가 여부나 ~정하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	주택(주택부수토지 ^{*1)} 포함) : 허가 여부~정하는 구조(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개정																																																												
p371	*1) 보유기간 : 장기보~ *2) 거주기간 : 주민등~	*1)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함) 개정																																																												
p386	①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7.1.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 개정																																																												
p444	<table border="0"> <tr> <td></td> <td>조건부·종합</td> <td>원천 t</td> <td>기분 t</td> <td></td> </tr> <tr> <td>이 자</td> <td>10^{25%}</td> <td></td> <td></td> <td></td> </tr> <tr> <td>G. ×</td> <td>5^①</td> <td></td> <td></td> <td></td> </tr> <tr> <td>G. ○</td> <td>3+20=23</td> <td>5</td> <td>18</td> <td>×10%=</td> </tr> <tr> <td>출자</td> <td>38</td> <td>20</td> <td>18</td> <td></td> </tr> </table>		조건부·종합	원천 t	기분 t		이 자	10 ^{25%}				G. ×	5 ^①				G. ○	3+20=23	5	18	×10%=	출자	38	20	18		<table border="0"> <tr> <td></td> <td>조건부·종합</td> <td>원천 t</td> <td>기분 t</td> <td></td> </tr> <tr> <td>이 자</td> <td>10^{25%}</td> <td></td> <td></td> <td></td> </tr> <tr> <td>G. ×</td> <td>5^①</td> <td></td> <td></td> <td></td> </tr> <tr> <td>G. ○</td> <td>3+20=23</td> <td>5</td> <td>18</td> <td>×10%=1.8</td> </tr> <tr> <td>출자</td> <td>38</td> <td>20</td> <td>18</td> <td></td> </tr> </table> <table border="0"> <tr> <td>39.8</td> <td>금융소득금액</td> </tr> <tr> <td>+10</td> <td>사업소득금액</td> </tr> <tr> <td>49.8</td> <td>종합소득금액</td> </tr> <tr> <td>- 4.8</td> <td>종합소득공제</td> </tr> <tr> <td>45</td> <td>과세표준</td> </tr> </table>		조건부·종합	원천 t	기분 t		이 자	10 ^{25%}				G. ×	5 ^①				G. ○	3+20=23	5	18	×10%=1.8	출자	38	20	18		39.8	금융소득금액	+10	사업소득금액	49.8	종합소득금액	- 4.8	종합소득공제	45	과세표준
	조건부·종합	원천 t	기분 t																																																											
이 자	10 ^{25%}																																																													
G. ×	5 ^①																																																													
G. ○	3+20=23	5	18	×10%=																																																										
출자	38	20	18																																																											
	조건부·종합	원천 t	기분 t																																																											
이 자	10 ^{25%}																																																													
G. ×	5 ^①																																																													
G. ○	3+20=23	5	18	×10%=1.8																																																										
출자	38	20	18																																																											
39.8	금융소득금액																																																													
+10	사업소득금액																																																													
49.8	종합소득금액																																																													
- 4.8	종합소득공제																																																													
45	과세표준																																																													
p462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개정 (2024.7.1.부터 시행)																																																												
p489	④ 위 이외~10억원 이상인 것	④ 위 이외의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개정 (중전 : 10억원)																																																												
p491	(나) 법인인 경우 : 수입~	(나)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함). 이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부터 시행)																																																												
p493	① 심사청구금액이 ~ ②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심사청구~	①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중전 : 3천만원)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 개정 (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p548	51 세무조사 결과에 ~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	51 세무조사 결과에 ~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